



사회적 고찰

# 인간배아복제, 생명윤리적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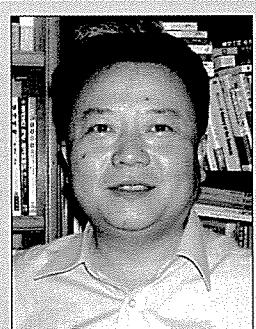
이번에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지난 5년여 동안 우리 사회 각계에서 이 법률에 걸고 있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며, 윤리를 존중하고 추구하는 법안이라기보다는 회피하고 처방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지난** 해 말 5년에 걸친 논란 끝에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생명공학을 육성하는 법률만이 있었을 뿐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생명공학의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규율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는 전무했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 법률 제정이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생명 윤리와 안전과 연관된 포괄 입법으로 제정되어 인간복제와 같은 특정한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생명공학의 급격한 전개양상과 그 적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그동안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했던 잔여 배아의 관리 등이 언급되었다는 점은 이번 법률 제정이 5년여에 걸친 시민사회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김동광 교수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 우리 시대에 윤리란 무엇인가?

그러나 다른 한편,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 법률’은 오늘날 과학기술, 특히 생명공학이 윤리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 방식을 투영한다. 최근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국내 과학자팀의 연구에서 나타난 윤리 문제와 그에 대한 해당 과학자들의 태도에서 잘 드러났듯이, 상당수의 과학자들이 윤리를 고려하는 방식은 발생가능한 윤리의 문제를 ‘회피’ 함으로써 해당 기술을 사회에 무난히 연착륙시키고 적용시키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윤리는 처리되거나 처방되어야 하는 문제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점에는 두 가지 일반적인 가정이 내재한다. 하나는 과학과 윤리를 마치 대립적인 것처럼 보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관점이다. 이 대립 구도에서 과학은 항상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무엇으로 인식되고, 그에 비해 윤리는 과학이 행진하는 길목에 가로놓인 걸림돌이나 장애물 정도로 간주된다(positive한 과



학에 대해서 negative한 윤리라는 식의 인식 구도).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은 본체이고 윤리는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문제라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다. 흔히 신문에는 “중요한 과학 연구가 사소한 윤리적 문제에 걸려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엄혹한 상황에서 한가롭게 윤리를 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논조의 기사들이 실리곤 한다. 여기에는 윤리란 적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다가 해당 연구를 인정해야 하며, 연구 자체를 가로막거나 폐기 시킨다면 그것은 넌센스라는 식의 암묵적 전제가 내재되어 있다. “윤리 문제가 발생한다”, “윤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식의 어법 자체가 이런 관점에 의해 오염된 어휘들이다.

그러나 윤리는 결코 회피되거나 처리되어야 할 무엇이 아니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존중해야 할 무엇이다. GMO사태, 영국의 광우병(BSE) 사태, 그리고 최근 <사이언스>에 보도된 국내 학자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적 문제 등에서 잘 드러났듯이 윤리 문제를 투명하고 정당하게 다루지 않을 경우, 과학과 사회 양자에 모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지난 5년여 동안 우리 사회 각계에서 이 법률에 걸고 있는 기대에 크게 못미치며, 윤리를 존중하고 추구하는 법안이라기보다는 회피하고 처방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각계의 견해를 받아들여 법률 자체를 개정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 문제되는 조항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조항은 어떤 것들인가? 우선 2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부터 살펴보자.

윤리문제는  
결코 회피하거나  
적당히  
거쳐 가야 할  
그 무엇이 아니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존중해야 할  
가치이다.

이 법률의 실질적인 집행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후 국가위원회)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가장 큰 논란이 벌어졌던 항목은 제7조 3항으로 이 법률은 7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국가위원회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위원회는 생명공학의 전반적인 정책을 둘러싼 협력이나 조정의 자리가 아니며, 윤리적인 문제를 심의하는 위원회이다.

둘째, 흔히 장관들이 포함되어야 위원회에 힘이 실린다는 주장이 있지만, 윤리가 작동하는 방식은 정치와 달라야 하며 힘있는 자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윤리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윤리가 작동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근거는 보통사람들의 건전한 상식, 시민적 상식이다.

셋째, 국가위원회는 단순한 결정이나 해결의 장(場)이 아니라 윤리 문제를 고려하고 공론화시키는 ‘숙의(deliberation)’의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00~2001년에 이루어진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교수)’의 경험을 통해서 숙의와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 구성은 숙의와 공론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후 기관위원회)에 대한 조항은 현행 조항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물론 이번 법안에 이 조항이 설치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흔히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라 불리는 기관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기관에서 스스로 해당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규율하는 기초적인



장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10조 구성과 운영은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 외의 종사자 1인과 해당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1인”의 포함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자 중심으로 형성된 위원회에 한 사람의 비연구자가 참여한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자칫 윤리를 들러리로 만들고 기관위원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나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기관위원회를 외국 저널에 논문을 신기 위한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후하다.

IRB는 국가위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관 내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자와 분야 이외 종사자들이 토론과 숙의를 통해 윤리에 대한 상호교육을 수행하고 윤리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의미가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제3장 배아 등의 생성 연구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최소한 지난 2000년 과학기술부 산하에 구성되어 활동했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합의 수준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로 하겠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6개월간에 걸친 진지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으로도 인간배아를 창출해서 연구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다만 출기세포 연구를 지원하는 한시적인 조치로 현재 남아있는 잔여배아에 대한 연구만을 허용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제23조에서 체세포 복제배아를 잔여배아와 동등한 지위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을 두어서 규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 유전자 검사, 제5장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제6장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자. 사실 그동안 이 주제들은 배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완성 이후,  
유전자 결정론과  
조작적 생명관이  
유포되고  
유전자가  
큰 권력으로  
부상했다.

아복제 문제에 비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법률의 4장과 5장의 상당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국가는 법률을 제정하기에 앞서 해당주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논쟁과 학습과정을 촉진하고 장려할 책임이 있다. 참여정부가 단지 수사(修辭)에 그치지 않으려면 의례적인 공청회와는 다른 자세, 즉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우리 사회의 상식을 수렴하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의 부재로 말미암아 바이오 벤처들의 유전자 검사에 대한 선정적이고 무분별한 광고 공세, 미아찾기 사업을 비롯한 유전자 DB 구축 움직임, 확인되지 않은 유전자 치료의 위험한 적용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인간유전체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의 완성 이후 유전자 결정론과 조작적 생명관이 유포되었고, 그 결과 유전자가 우리 사회에서 매우 큰 권력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이용은 지극히 신중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이 법률의 제정과 개정과정도 크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포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유전정보는 다른 정보에 비해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는가?

최근 유전정보가 생명현상이나 질병, 또는 질병 외 특성(키, 지능 등)을 설명하는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마치 생명현상 자체인 양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연구비와 사회적 지원을 얻으려는 일부 무분별한 학자와 무책임한 언론에 의해 유전자에 대한 연구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거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질병 외 특성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인 양 호도되는 경향



이 있다. 그러나 유전정보가 특권적인 지위를 갖거나 분자적 접근방식이 생명에 대한 이해에서 특권적 방식이라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 또한 법정이나 그밖의 상황에서(미아찾기의 경우도 포함) 유전정보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어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정보와 체계들이 무시되거나 위축될 수 있다. 법률 제32조에서 제35조까지 거론되는 유전자은행이나 DB 구축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될 것이 아니라 그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그 적용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 또는 국가 기관들이 윤리의 측면에서 사기업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동안 국가 기관들이 보여준 행정편의주의와 성장지상주의는 제24조의 유전자 검사 및 연구에 대한 신고의무에서 국가기관을 면제시킨 “다만, 국가기관이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제32조 1항 유전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서 “국가 기관이 직접 유전자 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셋째, 과연 개인의 동의를 통해 윤리적 문제를 존중할 수 있는가? 제26조를 비롯한 조항들은 당시자인 개인들이 생명공학 연구를 둘러싼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애국주의와 성장지상주의는 독특하고 강고한 과학주의(scientism)와 결합되어 윤리문제의 공론화와 사회적 학습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 개인의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애국주의와  
 성장지상주의는  
 독특하고 강고한  
 과학주의(scientism)  
 와 결합되어  
 윤리문제의 공론화와  
 사회적 학습을  
 저해하고 있다.

윤리 문제를 개인의 판단으로 격하시키고, 공동체의 임무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GMO 라벨링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요구된다. 그 중요한 역할은 공론화, 논쟁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정보 제공, 공식교육과 비공식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윤리 의식의 함양 등이 될 것이다. 따라서 법률은 제7장 감독 뿐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윤리 교육이나 사회적 학습에 대한 규정을 (선언적이라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모쪼록 처음 마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윤리를 존중하는 법률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

▶ 29p에서 이어짐

와 성체줄기세포 중 어느 것이 질병치료를 위해 더 가치있게 활용 가능한지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배아세포배양 연구를 전면 금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러나 ‘성체줄기세포(Adult stem cell)’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격려받고 연구가 장려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만일 이같은 배아세포연구를 방지하면 연구목적의 배반포(胚盤胞)생산을 위해 작은 생명을 희생시켜 생물학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락될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해 시리즈 형식의 아기를 탄생시키는 연구가 거리낌없이 진행될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점이 연구를 멈춰야 할 적기입니다. 만일 인간복제 연구가 한번 허용되게 되면 ‘인간배아 줄기세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결국은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을 초래할 것입니다. 🐦